

정책 이슈페이퍼 13-06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적립금의 합리적 사용 방안

박정순 외

목 차

- I. 배경 및 문제점 / 1
- II. 조사 및 분석 결과 / 3
- III. 정책 제언 / 14
- VI. 기대 효과 / 18
- <참고자료> / 19



에너지경제연구원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I. 연구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필요성

-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집사법)은 건설비용 적립금의 사용방안에 대한 규정 부재
 -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적립금(이하 건설비용 적립금)’은 집단에너지사업에 규정된 법정적립금
 - 건설비용 적립금의 적립의무 대상자는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건설비용 부담금으로 공급시설을 취득하고, 해당 공급시설의 감가상각비(공급시설감가상각비)를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업자이며,¹⁾ 의무적립액은 공급시설감가상각비 징수분
 - 집사법은 건설비용 적립금의 적립의무, 의무대상, 적립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적립금의 사용방안에 관하여 규정이 부재
 - 15년 이상 된 노후 공급설비의 증가로 건설비용 적립금의 활용에 주목

2. 연구 목적

- 건설비용 적립금의 현황 조사·검토 및 합리적 사용방안 모색 필요
 - 건설비용 적립금의 활용에 대한 필요성은 커지고 있으나, 건설비용 적립금에 대한 선행연구는 전무한 실정
 - 집사법에 규정된 건설비용 적립금의 적립실태 파악

1) 집사법 시행규칙 제22조

- 적립된 건설비용 적립금의 사용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건설비용 적립금의 현황 파악을 통해 가용한 적립금의 규모를 파악하고 노후설비 대체를 위한 합리적 사용방안 모색이 필요
- 사업자별 사업개시 시점, 열공급 비중 등을 고려할 때 향후 5년 이내에 전체 열공급에서 15년 이상 된 노후설비가 점하는 비중은 80%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
- 노후설비 대체를 위해 적극적인 사용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
- 적립 취지 및 근거법과의 정합성 유지
- 이를 통한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 추구

II. 조사 및 분석 결과

□ 건설비용 적립금 제도

- 건설비용 적립금의 근거법은 집사법과 동법 시행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0조의3(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사업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미처분이익잉여금 중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으로 취득한 공급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으로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의무 대상 사업자 등) ①법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으로 취득한 공급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공급시설감가상각비"라 한다)을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에 공급시설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로 한다.

- 건설비용 적립금의 적립 명목은 공급시설 건설비용으로 되어 있으며 적립금의 사용방법은 미정
 - 적립방법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매년 적립하는 것을 원칙
 -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부족하면 당해 연도 미적립분을 다음 연도에 적립
 - 적립시한은 법규상 정해져 있지 않으나 적립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 존재
- 건설비용 적립금의 배경이 되는 두 가지 요인은 공설비용 부담금과 공급시설감가상각비
 - 건설비용 부담금은 사용자가 지불하는 공급시설 취득재원으로 1987년부터 적용

- 지역난방 도입 초기에 국내 민간자본시장이 취약한 여건하에서, 정부는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며 지역난방의 투자·보급을 촉진하고자 건설비용 부담금 제도를 도입
 - 공급시설감가상각비는 건설비용 부담금으로 취득한 공급시설의 감가상각비로서, 1987년부터 2011년까지 요금을 통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
 - 그러나 정부가 2011년에 고시 개정을 통해 공급시설감가상각비를 요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이후 공급시설감가상각비는 사용자로부터 징수 불가
- 부담금은 강제성을 가지며 공익사업의 재원확보 수단이라는 점에서 조세와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

<표 2-1> 조세와 부담금의 차이

	부과 근거	지출 용도	특징
부담금	특정 이해관계	특정 용도	부과 · 징수가 용이
목적세	담세력 여부		부담자의 인적 범위가 다양
보통세		지출의 자율성	안정적 세원 확보가 우선

자료: 구해동(2002) 내용을 요약, 「김현아, 지방공공재의 비용부담 원칙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4.」에서 재인용, 수정

- 건설비용 부담금의 부과기준은 사업자의 공급규정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2) 사업자 대부분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부과기준을 준용
- 건설비용 부담금의 부과기준은 크게 온수와 냉수로 구분되고 온수는 주택용·업무용·공공용으로 세분화되어 있음.
 - 신축 건물과 기존 건물을 구분하여 차등단가를 적용하고, 주택용은 계약면적(m^2) 단가를, 업무용·공공용 및 냉수는 연결열부하(Mcal/h) 단가를 적용

2) 집사법 시행규칙 제19조

<표 2-2> 건설비용 부담금 부과기준

구분	계약종별		단위	단가		
온수	주택용		계약면적 1㎡	14,040		
				7,050		
	업무용		연결열부하 1Mcal/h	0~300Mcal/h	167,630	
				301~1,000Mcal/h	131,360	
				1,001~3,500Mcal/h	126,180	
				3,501Mcal/h 이상	110,630	
				0~300Mcal/h	96,740	
				301~1,000Mcal/h	82,290	
				1,001~3,500Mcal/h	79,050	
				3,501Mcal/h 이상	69,300	
	공공용	학교, 사회 복지시설		연결열부하 1Mcal/h	88,500	
					52,300	
		그 이외		연결열부하 1Mcal/h	0~300Mcal/h	150,860
					301~1,000Mcal/h	118,220
					1,001~3,500Mcal/h	113,560
					3,501Mcal/h 이상	99,570
					0~300Mcal/h	87,060
					301~1,000Mcal/h	74,050
					1,001~3,500Mcal/h	71,140
					3,501Mcal/h 이상	62,370
냉수			연결열부하 1Mcal/h	0~1,000Mcal/h	429,300	
				1,001~2,000Mcal/h	269,800	
				2,001~3,000Mcal/h	230,700	
				3,001Mcal/h 이상	208,600	

자료: 한국지역난방공사, 열공급규정(2013.5.30.)

주1) 계약면적 또는 계약용량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열공급이 될 경우에는 그 때부터 계약면적 또는 계약용량에 산입

주2)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부속병원에 대한 온수 공사비부담금은 공공용 중 "그 이외"에 적용되는 단가를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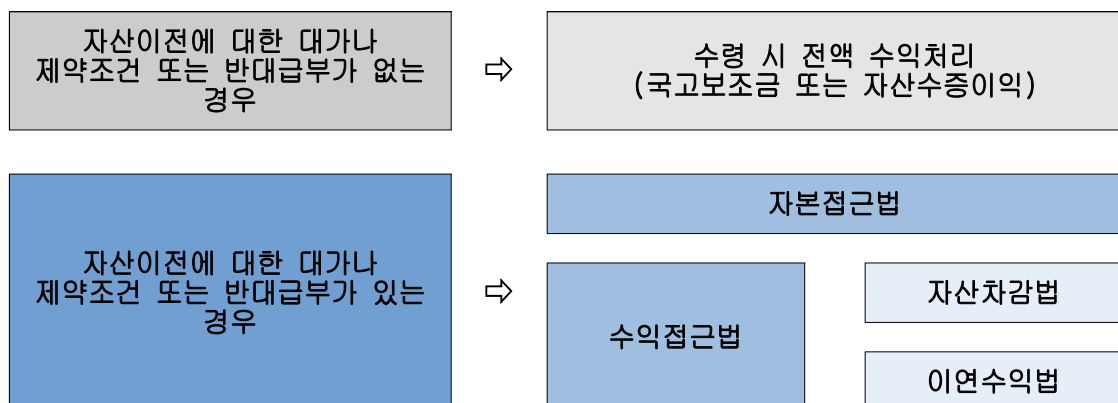
- 건설비용 부담금의 징수실적은 2011년까지 약 37,000여 건에 이르며, 금액으로는 2조 7천억 원 규모로 집계
- 건설비용 부담금의 징수실적은 최근 들어 감소하는 추세

- 건설비용 부담금의 부과 취지는 “중앙난방방식이나 개별난방방식의 경우 입주자가 난방설비 건설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지역난방의 경우 중앙난방방식이나 개별난방방식 대신 사업자가 지역난방설비를 하는 것이므로, 타 난방방식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
- 건설비용 부담금은 사용자에게 비용부담이 크다는 점, 부담금 산정근거로 고려되는 중앙난방방식이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는 점, 부과명목과 산정근거가 부합하지 않는 점, 부담금 징수주체의 적격성 여부 등에 관한 논란이 있고, 건설비용 부담금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음.
- 반면, 공급시설의 내구연한이 도래함에 따라 건설비용 부담금의 재부과(이하 재부담금) 허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 건설비용 적립금의 회계처리 원칙 및 방법

- 회계처리는 일반적인 상거래와는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의 회계처리방법을 사용하여 왔으며, 정부나 고객으로부터 자산을 이전받는 경우의 회계처리 방법은 이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

[그림 2-1] 자산이전의 회계처리 방법



○ 자산접근법

- 건설비용 부담금을 수취한 경우 직접 자본의 한 항목으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주로 자본 항목 중에서 “자본잉여금”으로 처리
- 건설비용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수령하는 경우에 전액을 자본항목으로 회계처리하므로 자본총계를 증가시키는 효과 발생

○ 수익접근법

- 수취한 건설비용 부담금을 일정기간 동안 손익계산서 상의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법
- 자본접근법의 논리적 비약을 보완할 수 있는 회계처리방법이나, 수취한 건설비용 부담금에 대한 성격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하여 다시 자산차감법과 이연수익법으로 나누어지며, 현행 회계기준 하에서 양자 공히 채택 가능한 대안임.

<표 2-3> 건설비용 부담금의 회계처리 방법 비교

구분	자본접근법	수익접근법	
		자산차감법	이연수익법
취득시점	① 토지의 취득가액 및 장부가액은 100원 ② 기계장치의 취득가액 및 장부가액은 300원 ③ 자본잉여금: 150원	① 토지의 취득가액은 100원, 장부 가액은 50원 ②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은 300원, 장부가액은 200원	① 토지의 취득가액 및 장부가액은 100원 ② 기계장치의 취득가액 및 장부가액은 300원 ③ 이연수익: 150원
매기손익	기계장치 감가상각비는 30원	기계장치 감가상각비는 20원(= 30원 - 10원)	① 기계장치 감가상각비는 30원 ② 이연수익환입(기타매출액)은 15원
세법	토지에 대한 건설비용 부담금 50원은 처분시까지 과세되지 않음	좌동	현행 세법은 자산차감법을 기준으로하고 있으므로 기타매출액 중 5원에 대한 과세여부 문제 발생

□ 적립현황 및 문제점

- 정상적립 사업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GS파워, 안산도시개발 등 3개사에 불과하며, 대다수 사업자는 미적립 상태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적립을 못하고 있음.
 - 기타 사업자들은 누적 적자로 인해 적립불가
 - 적립의무 해당여부의 판단근거 문제
 - 의무적립액 산정근거 문제
- 적립의무 사업자 그룹1의 경우, 정상적립 사업자(그룹1A)와 누적손실로 인한 적립지연 사업자(그룹1B)로 재분류될 수 있으나, 의무적립액은 공히 2011년까지의 공급시설감가상각비 징수 총액
 - 적립의무 대상 사업자가 적립해야 할 의무적립액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그룹1(그룹1A와 그룹1B)은 열요금 상한의 적용대상이므로 동일한 추정방법이 적용

<표 2-4> 건설비용 적립금 의무적립액 추정(그룹1)

(단위: 백만 원)

	부담금 징수액(1)	부담금 잔액(2)	추정 적립액(3)	실제 적립액(4)
한국지역난방공사	1,806,877	960,368	660,277	541,481
(주)GS파워	173,287	119,476	41,973	64,282
안산도시개발	58,090	31,119	21,037	1,910
인천종합에너지(주)	66,185	58,608	5,910	-
미래엔인천에너지(주)	7,548	7,439	85	-
청라에너지	82,065	80,278	1,394	-
인천공항에너지	36,360	29,525	5,331	-

	부담금 징수액(1)	부담금 잔액(2)	추정 적립액(3)	실제 적립액(4)
㈜휴세스	19,659	17,758	1,483	-
한국CES	5,747	4,155	1,242	-
전북에너지서비스	4,240	4,048	150	-
수완에너지㈜	38,505	34,899	2,813	-
부산정관에너지	17,494	14,997	1,947	-
경기CES	9,090	7,429	1,296	-
NH공사	89,971	51,997	29,620	-
㈜삼천리	14,084	13,569	402	-
충남도시가스	12,196	10,981	947	-
대구도시가스	8,175	5,962	1,726	-
코원에너지서비스㈜	13,410	12,664	582	-
합계	2,462,983	1,465,272	778,215	607,673

주(1) 사업 초기부터 2011년까지 건설비용 부담금 징수 총액

주(2) = (1) - (2011년까지 공급시설감가상각비 또는 이연수익으로 인식한 금액)

주(3) = {(1) - (2)} × (1 - 22%). 이론상 2011년까지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금액

주(4) 사업자가 이익처분을 통해 재무상태표에 건설비용 적립금으로 실제 적립한 금액

주(5) '공급시설감가상각비 × (1 - 22%)'를 적용하여 법인세 효과를 차감

- 그룹5는 별도 기준의 열요금 상한 적용대상이므로 별도의 추정방식을 적용하고 그룹6은 별도의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사업자이므로, 해당 요금체계를 고려하여 추정

<표 2-5> 건설비용 적립금 의무적립액 추정(그룹5, 그룹6)

(단위: 백만 원)

	부담금 징수액(1)	부담금 잔액(2)	추정 적립액(3)	실제 적립액(4)
서울특별시	176,098	47,069	129,029	-
대전열병합㈜	43,029	24,653	14,333	-
대성산업㈜코젠사업부	20,672	16,396	3,335	-
합계	239,799	88,118	146,697	-

- 2011년 말 현재 정상 적립 사업자의 적립금액은 607,673백만 원
 - 누적손실 사업자의 의무적립액 추정치를 합산하면, 건설비용 적립금의 의무적립액 규모는 약 8,00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
- 적립금 적립의 문제점
 - 다수 사업자는 적립지연 장기화 및 적자로 인한 적립불가
 - 사업자간 적립여건의 차이 존재
 - 건설비용 적립금 사용의 문제 발생

□ 건설비용 적립금의 사용방안

- 적립금의 사용조건으로 적립취지 부합성과 근거법과의 정합성이 요구
 - 건설비용 적립금의 사용은 용도조건(공급시설 건설비용)과 보상조건(사용자 대상에 대한 보상)을 충족해야 함.
- 사용자에게 대한 보상은 크게 직접보상과 간접보상으로 크게 구분
 - 직접보상은 적립금을 보상재원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건설비용 부담금 감면'과 '사용자 요금 감면'이 있음.
 - 간접보상은 공급시설 투자를 통해 확보되는 편익으로 보상하는 방법으로 '공급시설 공동투자'가 있음

<표 2-6> 적립금 사용방안별 적용 조건 및 내용

사용방안	적용 조건 및 내용
건설비용 부담금 감면	• 재투자 발생시 건설비용 적립금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지불하여야 하는 부담금을 감면 • 재투자 발생시 사용자에게 대한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의 재부과 가능 조건 필요 • 이해당사자 동의
사용자 요금 감면	• 건설비용 적립금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지불하여야 하는 난방요금을 감면(공급시설 수선유지비 등) • 요금감면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 필요(열요금상한제 조정·개선 등, 특히 저비용사업자) • 이해당사자 동의
공급시설 공동투자	• 건설비용 적립금을 투자재원으로 사용, 광역 열공급 네트워크를 구축 • 광역네트워크의 독립적 운영, 저가열원우선투입원칙 적용 등의 보장 필요 • 이해당사자 동의

□ 적립금 사용의 영향

- 적립금 사용의 주요영향은 사용방안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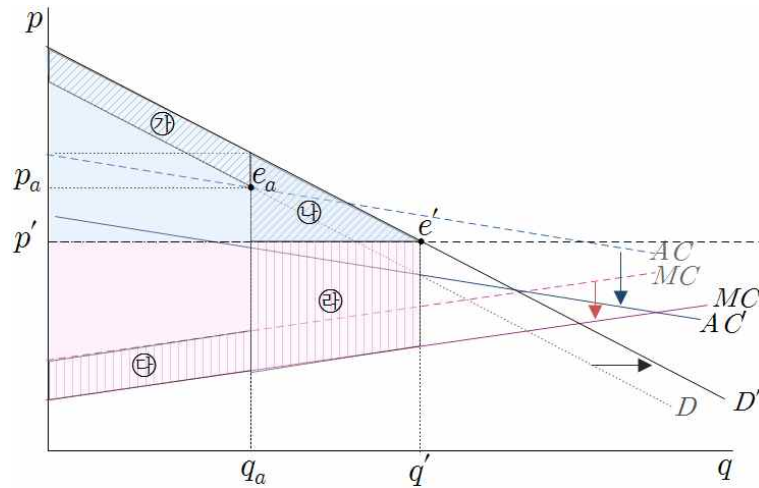
<표 2-7> 적립금 사용방안별 주요영향 비교

사용방안	영향
건설비용 부담금 감면	•(보상효과) 적립금에 의존 •(보상대상) 건물소유자 •(시장영향) 기존 시장구조 및 가격규제 유지
사용자 요금 감면	•(보상효과) 적립금에 의존 •(보상대상) 지역난방사용자 •(시장영향) 기존 시장구조 및 가격규제 유지
공급시설 공동투자	•(보상효과) 시장효율화의 편익에 의존 •(보상대상) 사용자, 사업자, 지역공동체 •(시장영향) 경쟁시장, 가격규제 폐지, 연관시장 조성

□ 공급시설 공동투자의 효과

- 지역난방시장 변화 (독점시장→경쟁시장)
 - (시장재편) 도매시장, 소매시장, 네트워크운영 등
 - (연관시장) 이차측 에너지서비스시장 등
- 지역난방시장의 합리적 구조조정
 - (공급확대) 고효율설비, 저가열원 등
 - (시장퇴출) 저효율설비, 고가열원 등
 - (여건확보) 대체열공급, 퇴출사업 업역전환
- 경쟁 및 효율화 유인에 의한 지속적 편익창출
 - (소매시장) 난방원간 경쟁
 - (도매시장) 열원간 경쟁. 사업자의 효율화 유인

[그림 2-2] 공동투자 이후의 지역냉난방시장



○ 사회적 후생 극대화 도모

<표 2-8> 공급시설 공동투자의 영향

영향요인	소비자	사업자	정부	시장
경쟁도입	· 사용자요금 ↓	· 효율화 유인 ↑	· 독점감시 자원소요 ↓	· 집단에너지경쟁력 ↑
도매경쟁	· 사용자요금 ↓	· 시장진입여건 ↑	· 거래소 설계 · 운영원칙 수립	· 열시장 진입장벽 ↓
소매경쟁(가능성)	-	· 소매시장활용	· 소매경쟁인프라 활용	· 소매경쟁인프라 조성
저가열원 개발·이용	· 사용자요금 ↓	· 생산비용 ↓	· 에너지안보능력 ↑	· 사회적 생산비용 ↓
미활용열원 개발·이용	· 환경개선 ↑	· 미활용열원개발유인 ↑	· 기후변화대응력 ↑	· 신재생에너지시장 ↑
고효율설비 이용 촉진	· 사용자요금 ↓	· 고효율설비 이용률 ↑ · 저효율설비 이용률 ↓	· 에너지이용효율화 ↑	· 시장효율화 ↑
공급설비 대체비용 절감	· 사용자요금 ↓	· 설비투자효율 ↑	· 보조지원 합리화 ↑	· 사회적 열공급비용 ↓
설비이용률 제고	· 사용자요금 ↓	· 수익률 ↑	-	· 시장효율화 ↑
대체공급력 확보	· 공급안정성 ↑	· 공급중단위험비용 ↓	· 공급안정성 ↑	· 비효율 요인 ↓
지역냉난방공급권 확대	· 이용편의·가능성 ↑	· 생산·판매 ↑	· 에너지이용효율화 ↑ · 에너지복지정책 ↑	· 집단에너지경쟁력 ↑

Ⅲ. 정책 제언

□ 적립방법의 개선

- 정책의 관점에서 가장 시급한 사안은 건설비용 적립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
 - 고비용사업자의 경우 적립지연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우려가 있음.
 - 사업자 유형에 따라 현실적으로 적립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적립방법 대안 1: 부분적립 방식
 -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이익이 연간 의무적립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이익을 고정비 원가 항목별로 균등배부를 통하여 적립하는 방법
 -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립을 강제할 수 있음.
- 적립방법 대안 2: 강제적립 방식
 - 사업의 영속성 확보에 필요한 우선 지출을 배려
 - 법인세, 고정운영비, 이자비용 등의 우선 지출액을 차감한 고정비 회수분이 총감가상각비를 초과할 경우, 실제 발생한 이익 전액을 적립하도록 하는 방법
- 적립방법 대안 3: 미처분이익잉여금과 의무적립금 가운데 적은 금액을 강제 적립
 - 우선 지출 항목인 법인세, 고정운영비, 이자비용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사업자에게 처분 가능한 이익 발생 시 적립을 강제하는 개념

□ 적립규정의 개선

- 집사법 제20조의3은 적립 명목을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으로 지정하였고, 동법 제2조의6은 '공급시설'을 '사업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로 규정
 - 적립금은 사용자 요금의 과납분이지만 적립금의 사용범위는 사업자 소유 자산의 취득으로 제한
- 동법 제57조의4는 '제20조의3을 위반하여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 적립시한의 법적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미흡
- 동법 22조는 적립의무 대상 사업자를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에 공급시설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로 한다."고 규정
 - 열요금 상한규제로 고정비 미회수가 발생할 경우 공급시설감가상각비 징수액을 확정하는데 필요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인수·합병시 적립금의 처리

- 현행 법규는 사업자 간의 인수·합병이나 자산양수도가 발생한 경우, 건설비용 부담금과 공급시설감가상각비의 징수분에 대한 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는 사업자의 누적적자가 해소되지 않고 흑자전환이 불가능하여 사업의 인수·합병이 고려되는 경우에 문제
 - 인수가격은 인수시점의 자산·부채가치와 향후 예상되는 영업현금흐름을 비교하여 평가하므로, 건설비용 부담금과 공급시설감가상각비의 징수분은 인

수사업자의 인수가격에 반영되기 어려움.

□ 적립금의 사용여건

- '건설비용 부담금 감면'은 재투자 발생시 사용자에게 대하여 건설비용 부담금의 재부과가 제도적으로 허용될 때 적용 가능
 - 재부과 허용여부가 정해지지 않아 이에 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
- '사용자 요금 감면'은 현행 열요금 상한제하에서 저비용사업자에게 적립금의 임의처분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저비용사업자에게 별도의 열요금 상한을 적용하는 등의 보완대책이 필요.
- '공급시설 공동투자'는 적립금을 광역네트워크 건설비용으로 사용
 - 경쟁도입의 물적 조건이 확보되지만, 유효경쟁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님.
 - 유효경쟁을 확보할 수 있는 광역네트워크 운영원칙을 적용하여야 함.
- 광역네트워크 도입으로 지역냉난방시장은 소매시장, 도매시장, 네트워크 운영부문 등으로 재편
 - 소매경쟁이 성립하면 도매경쟁은 자연히 성립하나 현실적으로는 소비자의 열원선택이 불가능하여 소매경쟁이 성립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도매경쟁이 성립하지 않음.
 - 이 경우 저가열원우선투입원칙을 광역네트워크 운영에 적용하면 소매경쟁이 성립하지 않아도 도매경쟁이 가능
 -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을 위해 광역네트워크 운영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열생산자의 네트워크 운영·소유는 지양
- '공급시설 공동투자'는 사회적 후생 극대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방안이지만,

사회적 수용성 확보가 선행

- 표준모형, 운영조직, 투자기금관리 등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할 필요

IV. 기대 효과

☐ 건설비용 적립금 실태 파악으로 집단에너지사업 환경의 파악 가능

- 공급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요금체계에 따른 열악한 사업환경에 대한 개선 필요성 제기
-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건설비용 적립금 의무 미이행에 대한 다양한 원인을 복합적으로 판단

☐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적립의무 미이행에 따른 실질적 대비책 모색 가능

- 건설비용 적립금의 운영실태 현황을 통해 노후된 설비의 교체 시기에 맞추어 적립금을 실질적으로 마련하는 방안 모색

< 참고자료 >

<국내문헌>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한국지역난방공사 및 대한석탄공사 기관운영감사, 2012.6.

강운산, 건설 관련 부담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2008.1.

고성삼, 회계·세무 용어사전, 법문출판사, 2006.8.25.

기획재정부, 2011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2012.5.

기획재정부, 2012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주요내용, 보도자료, 2013.5.31.

김현숙, 지역난방사업의 공사비부담금과 열요금 연계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자원·환경경제연구, 제17권 제3호, 2008.9.3.

김현아, 지방공공재의 비용부담 원칙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4.

노원구 설문조사(2010.12.13~12.22).

매일경제 용어사전.

부담금운용평가단, 부담금평가, 2010.8.

부산광역시조례 제4515호.

손원익,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의 관리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6.5.

에너지기본법 제·개정이유, 법률 제7860호, 2006.3.3.

이병태, 법률용어사전, 법문북스, 2010.1.15.

조정찬, 법령입안 심사기준 해설, 월간법제, 2011.3.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32호, 2011.2.23.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81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개정이유(법률 제6601호, 2002.1.14).

한국지역난방공사, 열공급규정(2013.5.30).

한국회계기준원,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헌재 1998. 12. 24. 98헌가1, 판례집 10-2, 819, 830-831.

헌재 1999. 10. 21. 97헌바84, 판례집 11-2, 433, 453-454.

헌재결정,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위헌소원 등」, 전원재판부 2001헌바90, 2003.5.15.

기획재정부, 에너지관리공단, 전자공시시스템 기업감사보고서 등 기타 자료.

<외국문헌>

IEA (2004). Coming in from the Cold : Improving District Heating Policy in Transitional Economics, OECD/IEA

Kenneth E. Train (1991). Optimal Regulation: The economic theory of natural monopoly, The MIT Press, Cambridge, MA

M. Cave, S. Majumdar, and I. Vogelsang, editors (2002). Handbook of Telecommunications Economics. Elsevier, Amsterdam

Viscusi, K., Vernon, J. and Harrington, J. (1997). Economics of Regulation and Antitrust (2nd ed.), MIT Press, Cambridge, MA

정책 이슈페이퍼 13-06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적립금의 합리적 사용 방안

2013년 11월 27일 인쇄

2013년 11월 29일 발행

저 자 박 정 순 외

발행인 손 양 훈

발행처 에너지경제연구원

437-713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

전화: (031)420-2114(代) 팩시밀리: (031)422-4958

등 록 1992년 12월 7일 제7호

인 쇄 크리커뮤니케이션(02)2273-1775
